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3-19
----------	---------

제출년월일 : 2003. 4 .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우리시 관내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전용공업용수 공급전까지 신산업용으로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개선사항으로 가산금 및 단기소멸시효 적용 조정 등 조례개정을 통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용가의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2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제28조제5항)
-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개선사항에 의거 현행 가산금 5%를 3%로 하향조정함(안제33조)
- 수도요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3년)적용을 신설함(안제46조의2)
- 수도계량기 검침의 위탁대상 범위 확대(안제44조제1항)
- 우리시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전용공업용수 공급시까지 별도 산업용을 신설, 적용함([별표3] [별표5])

3. 참고사항

- 상수도급수조례개정 추진계획(안)(2003. 3.27 상하수58442-158)
- 입법예고(2003. 4. 1~ 4.21) 결과보고 : 특이사항 없음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수용가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평균 사용(인정조정)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2를 감면 할 수 있다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급수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44조 제1항의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를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등을 타 회계·법인·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공동주택 관리령 제3조제1항의 관리주체를 말한다)에게”로 한다.

제46조 다음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소멸시효) 조례 제46조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업종별요율표 (제26조관련)

업종	구분	단계별요금		비고
		사용구분 (㎡)	금액 (원)	
가정용		1 ~ 10	400	
		11 ~ 20	600	
		21 ~ 30	680	
		31 ~ 40	810	
		41 ~ 50	880	
		51 이상	1,010	
업무용		1 ~ 20	760	
		21 ~ 50	900	
		51 ~ 100	1,030	
		101 ~ 300	1,130	
		301 이상	1,270	
영업용		1 ~ 30	850	
		31 ~ 50	1,100	
		51 ~ 100	1,360	
		101 이상	1,560	
육탕용 1종		1 ~ 200	910	
		201 ~ 300	1,020	
		301 ~ 500	1,120	
		501 이상	1,210	
육탕용 2종		1 ~ 200	1,250	
		201 ~ 500	1,360	
		501 ~ 1000	1,710	
		1001 이상	2,220	
산업용		1 ~ 500	760	
		501 ~ 1000	900	
		1001 이상	1,130	

[별표 5]

업종구분표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지방자치단체가 5호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가정용급수·담배소매업·양곡소매업·만화가게·문방구·지물포·철물점·복덕방·대서소(일반행정)·연단·인장업·수예점·고아원·영아원·양노원·탁아소·3평(10㎡)미만 소규모가게 및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
업무용	의류업소(양복점·양장점·커텐점)·무진회사(전당포 포함)·시설공원·가구점·안경점·농기구판매업·장 의사·독서실·철공소·석유판매소·기원·탁구장·인쇄소·시설소화전·농약사·관광서·학교·국·도립병원·교회·사찰·방송국·국영기업체·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익단체)·정당·철도용·농협·국책은행·신문사·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대한적십자사·수협·축협 및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
영업용	이미용업소·슈퍼마켓·사진관·세탁소·일반병원·전문의원·극장(공연장 포함)·다방·제과점·휴게실·싸롱·카바레·골프장(연습장 포함)·롤로스케이트장·유흥음식점(간이음식점 및 주점 포함)·자동차정비업·세차장·주차장(화물,용달차 주차장 포함)·검차장·볼링장·당구장·유기오락장·호텔·여관·여인숙·다과점(빙과점 포함)·주유소(산소,가스류 포함)·가축병원·약국·한약방·한의원·금융업소(보험회사,신용금고)·시중은행·예금취급소·예식장·백화점·양조업·학원·시설강습소·떡방앗간·도정업·각종 대리점 및 기타 유사한 업소·어육업·시장(종합상가 및 연쇄상가포함)·염색·표백업·운수업·및 관광업·창고보관업·제분업(사료공장)·칼라현상소·금은방·금속제품·부력제조업·제재소·목재소·수산업(제빙,냉동,수산물처리장,어판장 포함)·꽃집(원예 포함)·수족관·음악감상실·노래방·도매센타·대규모소매점·식육점·도축장·식품제조가공업·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 제조업·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탁구장 제외)·합성섬유·직물업·합성수지·제강업·조미료·조선업·유지업·기계기구제조업·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제지업 등 유사한 공업제품 및 제조가공업소·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중인 건물용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운반급수, 수도관파손에 의한 누수등은 영업용 최종단계 요율적용.
육탕용 1종	대중탕 및 비영리풀장
육탕용 2종	사우나탕·터키탕·가족탕·독탕·영리풀장·안마시술소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사업장. (다만, 전용공업용수 공급시까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요금의 조정) ⑤수도계량기 고장·급수용구의 파손·옥내누수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손해수량의 평균수량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28조(요금의 조정) ⑤수용가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평균사용(인정조정)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2을 감면 할 수 있다.</p> <p>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3조(가산금)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한다.</p>	<p>제33조(가산금) 급수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제44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⑤ (생략)</p> <p><신설></p>	<p>제44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수도계량기검 ----- -----수도계량기검 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을 타 회계·법인·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1항의 관리주체를 말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46조의2(소멸시효) 조례 제46조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업 종 별 요 율 표 (제26조관련)				[별표 3] 업 종 별 요 율 표 (제26조관련)					
업종	구분	단계별요금		비 고	업종	구분	단계별요금		비 고
	사용구분 (㎡)	금 액 (원)				사용구분 (㎡)	금 액 (원)		
가정용	1 ~ 10	400			가정용	1 ~ 10	400		
	11 ~ 20	600				11 ~ 20	600		
	21 ~ 30	680				21 ~ 30	680		
	31 ~ 40	810				31 ~ 40	810		
	41 ~ 50	880				41 ~ 50	880		
	51 이상	1,010				51 이상	1,010		
업무용	1 ~ 20	760			업무용	1 ~ 20	760		
	21 ~ 50	900				21 ~ 50	900		
	51 ~ 100	1,030				51 ~ 100	1,030		
	101 ~ 300	1,130				101 ~ 300	1,130		
	301 이상	1,270				301 이상	1,270		
영업용	1 ~ 30	850			영업용	1 ~ 30	850		
	31 ~ 50	1,100				31 ~ 50	1,100		
	51 ~ 100	1,360				51 ~ 100	1,360		
	101 이상	1,560				101 이상	1,560		
육탕용 1종	1 ~ 200	910			육탕용 1종	1 ~ 200	910		
	201 ~ 300	1,020				201 ~ 300	1,020		
	301 ~ 500	1,120				301 ~ 500	1,120		
	501 이상	1,210				501 이상	1,210		
육탕용 2종	1 ~ 200	1,250			육탕용 2종	1 ~ 200	1,250		
	201 ~ 500	1,360				201 ~ 500	1,360		
	501 ~ 1000	1,710				501 ~ 1000	1,710		
	1001 이상	2,220				1001 이상	2,220		
전 용	1~1000	600			산업용	1~500	760		
공업용	1001 이상	730				501~1000	900		
						1001 이상	1,13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5]</p> <p style="text-align: center;">업종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업종별</th> <th style="width: 90%;">구분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정용</td> <td>지방자치단체가 5호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가정용급수·담배소매업·양곡소매업·만화가게·문방구·지물포·철물점·복덕방·대서소(일반행정)·연단·인장업·수예점·고아원·영아원·양노원·탁아소·3평(10㎡)미만 소규모가게 및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업무용</td> <td>의류업소(양복점·양장점·커텐점)·무진회사(전당포 포함)·시설공원·가구점·안경점·농기구판매업·장 의사·독서실·철공소·석유판매소·기원·탁구장·인쇄소·사설소화전·농약사·관공서·학교·국·도립병원·교회·사찰·방송국·국영기업체·사회단체(사회단체 등 특에 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익단체)·정당·철도용·농협·국책은행·신문사·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대한적십자사·수협·축협 및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영업용</td> <td>이미용업소·슈퍼마켓·사진관·세탁소·일반병원·전문의원·극장(공연장 포함)·다방·제과점·휴게실·싸롱·카바레·골프장(연습장 포함)·물로스케이트장·유흥음식점(간이음식점 및 주점 포함)·자동차정비업·세차장·주차장(화물,용달차 주차장 포함)·검차장·불링장·당구장·유기오락장·호텔·여관·여인숙·다과점(빙과점 포함)·주유소(산소,가스류 포함)·가축병원·약국·한약방·한의원·금융업소(보험회사,신용금고)·시중은행·예금취급소·예식장·백화점·양조업·학원·사설강습소·떡방앗간·도정업·각종 대리점 및 기타 유사한 업소·어육업·시장(종합상가 및 연쇄상가포함)·염색·표백업·운수업·및 관광업·창고보관업·제분업(사료공장)·칼라현상소·금은방·금속제품·부력제조업·제재소·목재소·수산업(제빙,냉동,수산물처리장,어판장 포함)·꽃집(원예 포함)·수족관·음악감상실·노래방·도메센터·대규모소매점·식육점·도축장·식품제조가공업·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 제조업·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탁구장 제외)·합성섬유·직물업·합성수지·제강업·조미료·조선업·유지업·기계기구제조업·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제지업 등 유사한 공업제품 및 제조가공업소·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 중인 건물용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육탕용 1종</td> <td>대중탕 및 비영리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육탕용 2종</td> <td>사우나탕·터키탕·가족탕·독탕·영리풀장·안마시술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공업용</td> <td>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급수하는 곳 및 공업단지 등 공업전용지역에 급수하는 것. 다만,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공단내 공장은 시설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미리 공업용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장별로 사용기준을 정한다.</td> </tr> </tbody> </table>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지방자치단체가 5호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가정용급수·담배소매업·양곡소매업·만화가게·문방구·지물포·철물점·복덕방·대서소(일반행정)·연단·인장업·수예점·고아원·영아원·양노원·탁아소·3평(10㎡)미만 소규모가게 및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	업무용	의류업소(양복점·양장점·커텐점)·무진회사(전당포 포함)·시설공원·가구점·안경점·농기구판매업·장 의사·독서실·철공소·석유판매소·기원·탁구장·인쇄소·사설소화전·농약사·관공서·학교·국·도립병원·교회·사찰·방송국·국영기업체·사회단체(사회단체 등 특에 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익단체)·정당·철도용·농협·국책은행·신문사·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대한적십자사·수협·축협 및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	영업용	이미용업소·슈퍼마켓·사진관·세탁소·일반병원·전문의원·극장(공연장 포함)·다방·제과점·휴게실·싸롱·카바레·골프장(연습장 포함)·물로스케이트장·유흥음식점(간이음식점 및 주점 포함)·자동차정비업·세차장·주차장(화물,용달차 주차장 포함)·검차장·불링장·당구장·유기오락장·호텔·여관·여인숙·다과점(빙과점 포함)·주유소(산소,가스류 포함)·가축병원·약국·한약방·한의원·금융업소(보험회사,신용금고)·시중은행·예금취급소·예식장·백화점·양조업·학원·사설강습소·떡방앗간·도정업·각종 대리점 및 기타 유사한 업소·어육업·시장(종합상가 및 연쇄상가포함)·염색·표백업·운수업·및 관광업·창고보관업·제분업(사료공장)·칼라현상소·금은방·금속제품·부력제조업·제재소·목재소·수산업(제빙,냉동,수산물처리장,어판장 포함)·꽃집(원예 포함)·수족관·음악감상실·노래방·도메센터·대규모소매점·식육점·도축장·식품제조가공업·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 제조업·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탁구장 제외)·합성섬유·직물업·합성수지·제강업·조미료·조선업·유지업·기계기구제조업·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제지업 등 유사한 공업제품 및 제조가공업소·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 중인 건물용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육탕용 1종	대중탕 및 비영리풀장	육탕용 2종	사우나탕·터키탕·가족탕·독탕·영리풀장·안마시술소	전용공업용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급수하는 곳 및 공업단지 등 공업전용지역에 급수하는 것. 다만,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공단내 공장은 시설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미리 공업용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장별로 사용기준을 정한다.	<p>[별표5]</p> <p style="text-align: center;">업종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업종별</th> <th style="width: 90%;">구분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정용</td> <td>지방자치단체가 5호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가정용급수·담배소매업·양곡소매업·만화가게·문방구·지물포·철물점·복덕방·대서소(일반행정)·연단·인장업·수예점·고아원·영아원·양노원·탁아소·3평(10㎡)미만 소규모가게 및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업무용</td> <td>의류업소(양복점·양장점·커텐점)·무진회사(전당포 포함)·시설공원·가구점·안경점·농기구판매업·장 의사·독서실·철공소·석유판매소·기원·탁구장·인쇄소·사설소화전·농약사·관공서·학교·국·도립병원·교회·사찰·방송국·국영기업체·사회단체(사회단체 등 특에 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익단체)·정당·철도용·농협·국책은행·신문사·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대한적십자사·수협·축협 및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영업용</td> <td>이미용업소·슈퍼마켓·사진관·세탁소·일반병원·전문의원·극장(공연장 포함)·다방·제과점·휴게실·싸롱·카바레·골프장(연습장 포함)·물로스케이트장·유흥음식점(간이음식점 및 주점 포함)·자동차정비업·세차장·주차장(화물,용달차 주차장 포함)·검차장·불링장·당구장·유기오락장·호텔·여관·여인숙·다과점(빙과점 포함)·주유소(산소,가스류 포함)·가축병원·약국·한약방·한의원·금융업소(보험회사,신용금고)·시중은행·예금취급소·예식장·백화점·양조업·학원·사설강습소·떡방앗간·도정업·각종 대리점 및 기타 유사한 업소·어육업·시장(종합상가 및 연쇄상가포함)·염색·표백업·운수업·및 관광업·창고보관업·제분업(사료공장)·칼라현상소·금은방·금속제품·부력제조업·제재소·목재소·수산업(제빙,냉동,수산물처리장,어판장 포함)·꽃집(원예 포함)·수족관·음악감상실·노래방·도메센터·대규모소매점·식육점·도축장·식품제조가공업·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 제조업·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탁구장 제외)·합성섬유·직물업·합성수지·제강업·조미료·조선업·유지업·기계기구제조업·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제지업 등 유사한 공업제품 및 제조가공업소·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 중인 건물용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운반급수, 수도관파손에 의한 누수등은 영업용 최종단계 효율적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육탕용 1종</td> <td>대중탕 및 비영리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육탕용 2종</td> <td>사우나탕·터키탕·가족탕·독탕·영리풀장·안마시술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용</td> <td>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사업장. (다만, 전용공업용수 공급시까지)</td> </tr> </tbody> </table>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지방자치단체가 5호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가정용급수·담배소매업·양곡소매업·만화가게·문방구·지물포·철물점·복덕방·대서소(일반행정)·연단·인장업·수예점·고아원·영아원·양노원·탁아소·3평(10㎡)미만 소규모가게 및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	업무용	의류업소(양복점·양장점·커텐점)·무진회사(전당포 포함)·시설공원·가구점·안경점·농기구판매업·장 의사·독서실·철공소·석유판매소·기원·탁구장·인쇄소·사설소화전·농약사·관공서·학교·국·도립병원·교회·사찰·방송국·국영기업체·사회단체(사회단체 등 특에 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익단체)·정당·철도용·농협·국책은행·신문사·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대한적십자사·수협·축협 및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	영업용	이미용업소·슈퍼마켓·사진관·세탁소·일반병원·전문의원·극장(공연장 포함)·다방·제과점·휴게실·싸롱·카바레·골프장(연습장 포함)·물로스케이트장·유흥음식점(간이음식점 및 주점 포함)·자동차정비업·세차장·주차장(화물,용달차 주차장 포함)·검차장·불링장·당구장·유기오락장·호텔·여관·여인숙·다과점(빙과점 포함)·주유소(산소,가스류 포함)·가축병원·약국·한약방·한의원·금융업소(보험회사,신용금고)·시중은행·예금취급소·예식장·백화점·양조업·학원·사설강습소·떡방앗간·도정업·각종 대리점 및 기타 유사한 업소·어육업·시장(종합상가 및 연쇄상가포함)·염색·표백업·운수업·및 관광업·창고보관업·제분업(사료공장)·칼라현상소·금은방·금속제품·부력제조업·제재소·목재소·수산업(제빙,냉동,수산물처리장,어판장 포함)·꽃집(원예 포함)·수족관·음악감상실·노래방·도메센터·대규모소매점·식육점·도축장·식품제조가공업·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 제조업·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탁구장 제외)·합성섬유·직물업·합성수지·제강업·조미료·조선업·유지업·기계기구제조업·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제지업 등 유사한 공업제품 및 제조가공업소·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 중인 건물용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운반급수, 수도관파손에 의한 누수등은 영업용 최종단계 효율적용.	육탕용 1종	대중탕 및 비영리풀장	육탕용 2종	사우나탕·터키탕·가족탕·독탕·영리풀장·안마시술소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사업장. (다만, 전용공업용수 공급시까지)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지방자치단체가 5호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가정용급수·담배소매업·양곡소매업·만화가게·문방구·지물포·철물점·복덕방·대서소(일반행정)·연단·인장업·수예점·고아원·영아원·양노원·탁아소·3평(10㎡)미만 소규모가게 및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																												
업무용	의류업소(양복점·양장점·커텐점)·무진회사(전당포 포함)·시설공원·가구점·안경점·농기구판매업·장 의사·독서실·철공소·석유판매소·기원·탁구장·인쇄소·사설소화전·농약사·관공서·학교·국·도립병원·교회·사찰·방송국·국영기업체·사회단체(사회단체 등 특에 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익단체)·정당·철도용·농협·국책은행·신문사·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대한적십자사·수협·축협 및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																												
영업용	이미용업소·슈퍼마켓·사진관·세탁소·일반병원·전문의원·극장(공연장 포함)·다방·제과점·휴게실·싸롱·카바레·골프장(연습장 포함)·물로스케이트장·유흥음식점(간이음식점 및 주점 포함)·자동차정비업·세차장·주차장(화물,용달차 주차장 포함)·검차장·불링장·당구장·유기오락장·호텔·여관·여인숙·다과점(빙과점 포함)·주유소(산소,가스류 포함)·가축병원·약국·한약방·한의원·금융업소(보험회사,신용금고)·시중은행·예금취급소·예식장·백화점·양조업·학원·사설강습소·떡방앗간·도정업·각종 대리점 및 기타 유사한 업소·어육업·시장(종합상가 및 연쇄상가포함)·염색·표백업·운수업·및 관광업·창고보관업·제분업(사료공장)·칼라현상소·금은방·금속제품·부력제조업·제재소·목재소·수산업(제빙,냉동,수산물처리장,어판장 포함)·꽃집(원예 포함)·수족관·음악감상실·노래방·도메센터·대규모소매점·식육점·도축장·식품제조가공업·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 제조업·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탁구장 제외)·합성섬유·직물업·합성수지·제강업·조미료·조선업·유지업·기계기구제조업·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제지업 등 유사한 공업제품 및 제조가공업소·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 중인 건물용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육탕용 1종	대중탕 및 비영리풀장																												
육탕용 2종	사우나탕·터키탕·가족탕·독탕·영리풀장·안마시술소																												
전용공업용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급수하는 곳 및 공업단지 등 공업전용지역에 급수하는 것. 다만,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공단내 공장은 시설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미리 공업용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장별로 사용기준을 정한다.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지방자치단체가 5호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가정용급수·담배소매업·양곡소매업·만화가게·문방구·지물포·철물점·복덕방·대서소(일반행정)·연단·인장업·수예점·고아원·영아원·양노원·탁아소·3평(10㎡)미만 소규모가게 및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																												
업무용	의류업소(양복점·양장점·커텐점)·무진회사(전당포 포함)·시설공원·가구점·안경점·농기구판매업·장 의사·독서실·철공소·석유판매소·기원·탁구장·인쇄소·사설소화전·농약사·관공서·학교·국·도립병원·교회·사찰·방송국·국영기업체·사회단체(사회단체 등 특에 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익단체)·정당·철도용·농협·국책은행·신문사·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대한적십자사·수협·축협 및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																												
영업용	이미용업소·슈퍼마켓·사진관·세탁소·일반병원·전문의원·극장(공연장 포함)·다방·제과점·휴게실·싸롱·카바레·골프장(연습장 포함)·물로스케이트장·유흥음식점(간이음식점 및 주점 포함)·자동차정비업·세차장·주차장(화물,용달차 주차장 포함)·검차장·불링장·당구장·유기오락장·호텔·여관·여인숙·다과점(빙과점 포함)·주유소(산소,가스류 포함)·가축병원·약국·한약방·한의원·금융업소(보험회사,신용금고)·시중은행·예금취급소·예식장·백화점·양조업·학원·사설강습소·떡방앗간·도정업·각종 대리점 및 기타 유사한 업소·어육업·시장(종합상가 및 연쇄상가포함)·염색·표백업·운수업·및 관광업·창고보관업·제분업(사료공장)·칼라현상소·금은방·금속제품·부력제조업·제재소·목재소·수산업(제빙,냉동,수산물처리장,어판장 포함)·꽃집(원예 포함)·수족관·음악감상실·노래방·도메센터·대규모소매점·식육점·도축장·식품제조가공업·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 제조업·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탁구장 제외)·합성섬유·직물업·합성수지·제강업·조미료·조선업·유지업·기계기구제조업·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제지업 등 유사한 공업제품 및 제조가공업소·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 중인 건물용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운반급수, 수도관파손에 의한 누수등은 영업용 최종단계 효율적용.																												
육탕용 1종	대중탕 및 비영리풀장																												
육탕용 2종	사우나탕·터키탕·가족탕·독탕·영리풀장·안마시술소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사업장. (다만, 전용공업용수 공급시까지)																												